

# 2023년도 제1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6. 5.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연희, 박재화,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1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김선화 선임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김태일 주임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900건(안건번호 제2023-51243호~5427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51243호(순번 1번)는 블로그에서 소프트웨어의 '크랙'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중인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임이 인정되는 점,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51244호~51256호(순번 2번~14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51257호~51277호(순번 15번~35번)는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 의견임. 다만 이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51278호~54270호(순번 36번~3028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4,79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729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 2023-12297호~1302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72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III.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11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김선화 선임: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의 민원·권리자명 등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131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



이러한 사정 및 각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유통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소프트웨어의 '크랙' 파일을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해당 건은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파일을 전송중인 건으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하시는지?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을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1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 등에서 '◆◆ ◆◆◆' 또는 '◎ ◎◎◎'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35건임.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번 내지 14번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계속 심의해왔던 사안으로 가결에 동의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 내지 14번에 대해 가결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계속 보고드리겠음. 순번 15번 내지 35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와 블로그에서 제공 중인 영화, 방송 등 영상 불법복제물 총 72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5번 내지 35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모두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전송중인 사안으로 가결에 동의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5번 내지 35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6번 내지 3,02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4,792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1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임. 2023. 5. 17. 극장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150분 분량을 판매중인 사안임.

(영화 '옥수역귀신'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79번은 영화 '옥수역귀신'으로, 2023. 4. 19.에 극장 개봉하여 현재 일부 극장에서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80분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임.

(드라마 '오! 영심이'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690번은 드라마 '오! 영심이'임. 2023. 5. 30.부터 방영된 드라마의 6화 한 회차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36번부터 3028번까지 총 4,792개의 심의 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6번 내지 3028번 중 이미 삭

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1243호(순번 1번)에 대해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51244호~51256호(순번 2번~14번)와 안전번호 제2023-51257호~51277호(순번 15번~35번)에 대해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3-51278호~54270호(순번 36번~3028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0쪽부터 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2297호~13025호(순번 1번~729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6. 12.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